

김포시 환경피해 인정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

의 안 번 호	제3338호
--------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3. 10. 6.
제출자 유매희 의원
김기남 의원

1. 심사경과

- 본 안건은 10월 6일 유매희 의원, 김기남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- 환경오염 피해로 고통을 겪는 시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,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실효적인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다. 지원 대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5조)
- 라.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4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지난 제226회 임시회 당시 피해배상 및 지원근거가 상위법령에 존재하여 실효성 부족 사유로 부결되었으나 안 제5조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환경피해 관련 지원사업의 중복 가능성을 배제한 것으로 판단되는바,
-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